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5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7.

발 의 자 : 박정현 · 염태영 · 김남희
김남근 · 이학영 · 이광희
문진석 · 임문영 · 황명선
이주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. 또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, 이에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실태조사의 주기, 내용, 방법 및 공표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, 이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·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아울러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및 관련 법인·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

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
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4조의2
신설).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실태조사)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며, 이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범죄피해자 관련 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,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4조의2(실태조사)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며, 이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범죄피해자 관련 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,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